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안내

2024

K-BIZ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1.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란?

□ 소 개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중소기업이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조조직이자 비영리법인

–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협업을 통해 극복하고, 사회·경제·환경적 가치창출과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의 지속 발전을 도모

○ 중소기업협동조합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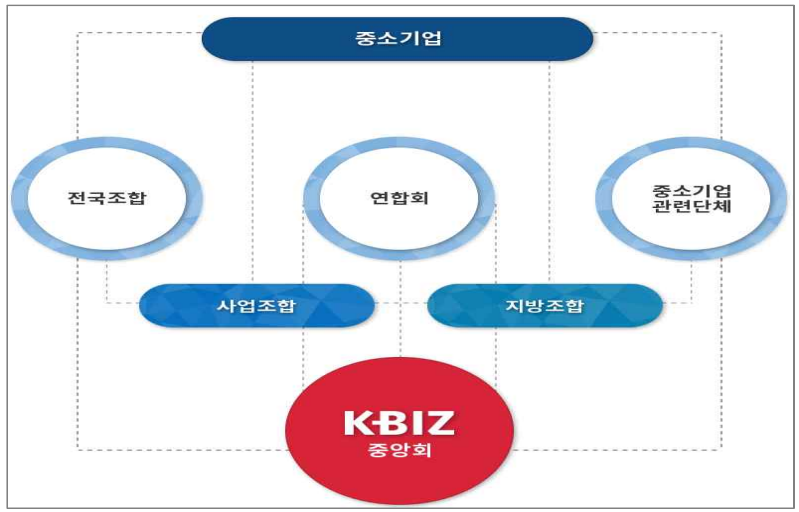

□ 지원근거

보조금 지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동사업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정부는 협동조합 지원 실효성 강화를 위해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지원 전국 17개 광역 및 90여개 기초지자체에 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제정되며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vs 협동조합기본법 비교

ㅇ 中企협동조합과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의결권·선거권, 책임범위, 가입·탈퇴 등에 있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 반면,**

ㅇ **설립 목적과 방법, 조합원의 자격, 설립요건 등에 있어서는 차이점 존재**

구 분		中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공통점	책임범위	출자액 한도 유한책임	
	의결권 선거권	출자지분 관계없이 1인 1표	
차이점	설립방법	✓ 인가주의	✓ 협동조합 : 신고주의 ✓ 사회적협동조합 : 인가주의
	법 인 격	✓ 비영리법인 *사업자단체	✓ 협동조합 : (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기업조직
	종 류	✓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요건	✓ 법정 최소 발기인수 ✓ 법정 최저 출자금 *중앙회 제외	✓ 법정 최소 발기인수
	가입대상	✓ 중소기업자	✓ 개인, 법인 등 자유
	조합원 출자한도	✓ 종류별 출자한도 상이 *전국·지방 20%, 사업 30%, 연합회 40% **중앙회 제외	✓ 종류별 출자한도 상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30%,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0%
	수행사업	✓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예시적 성격 **금융 및 보험업 영위불가 명시조항은 없음	✓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필수사업 명시 **금융 및 보험업 영위불가 ***사회적협동조합: 공익사업 40% 이상 필수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공제사업
	잉여금의 배당	✓ 조합원 출자금과 조합사업 이용분량 비례	✓ 조합 사업이용실적 및 출자지분비례 *사업이용실적 : 배당액의 50%이상 **납입출자액 : 납입출자금의 10%초과 불가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금지
	주무관청 및 감독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회계 등 보고, 검사)	✓ 기획재정부 (자율성 부여)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필요시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절차

Ⅰ 조합 설립 사전 준비	설립타당성 논 의 (포탈 가입)	· **협동조합 포탈 회원가입/컨설팅** · 설립형태 및 근거법 확정 · 설립요건 및 주무관청 확인 · 설립업종 및 명칭검토	· 법 제5,6,12조 시행령 제7조 · 시행령 제3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전준비 사 항	· 발기인 모집 및 자격확인 · 발기인수 및 출자금 요건 확인 · 공동사업(안) 마련	· 법 제13,78,88조 · 법 제17,27,80,90조, 시행령 제7조 · 법 제35,82,93조, 시행령 제9조
	유관기관 협 의	· 주무관청 및 유관기관 협의 · 설립 제반요건 및 절차 확인	· 법 제12조(발기인 대표) · 중소기업중앙회
	부속서류 준 비	· 설립취지서 작성 · 정관(안) 작성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 기타 조합설립자료 준비	· 정관례 참고 · 법 제7, 35, 36, 82, 83, 93. 94조 ·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2호
Ⅱ 창립 총회	창립총회 공 고	· 개최일 14일전 공고(공휴일 포함) · 일간지 등 게재	· 법 제28조 1, 2항 · 시행규칙 제2조
	창립총회 개 최	· 설립취지서·사업계획 등 의결 · 정관 의결 · 임원선임 의결(정족수 확인) · 의사록 작성	· 법 제28조 3, 4항 · 법 제29조 · 법 제50,51조, 시행령 제13조 · 법 제31조
Ⅲ 인가 신청	주무관청 인가신청 (포탈 등록)	· 총회 4주(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주무관청) · 인가신청서 및 10종 서류(2부) · **설립 신청서류 협동조합 포탈 등록**	· 법 제32조, 시행령 제8조 · 시행규칙 제3조
	유관기관 의견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기관 · 설립업종 타당성 등 종합검토	· 법 시행령 제8조 2항
	인 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자체장 인가 · 설립 인가 시 주무관청 통보	· 법 제12조, 시행령 제8조 · 설립인가증 수령
Ⅳ 후속 이행 사항	설립등기 및 신고 (포탈 등록)	· 발기인대표·이사장간 인수인계(2주) · 출자금 납입(3주 이내) · 법인 등기(등기소, 10종 서류) · 임원선임 보고(결격사유회보서 등) · 주무관청·중앙회(지역본부) 통보 · **인가·등기 서류 협동조합 포탈 등록**	· 법 제33조 · 법 제34조, 시행령 제6,7조 · 민법 제49조, 법 제128조 · 법 제130조, 시행규칙 제7조
	조합업무 개 시 (포탈 보고)	* **조합업무 시, 협동조합 포탈 활용** · 총회 개최·결과보고(매년 2월이내) · 이사장 및 임원선임 보고(2주) · 규약 및 규정 제정 · 주소 등 기타 주요사항 보고 준수(2주) · 분기별 조합원 변동보고(2주)	· 법 제43조, 제129조 · 법 제130조, 시행규칙 제7조 별지 8호 · 규약·규정례 참고 · 법 제 130조, 시행규칙 제7조 별지 7호 · 법 제130조, 시행규칙 제7조 별지 10호

4. 중소기업협동조합 형태

□ 협동조합 종류(법 제3조 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가 모여 사업 · 업종 · 지역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성격(형태)을 정하고 ▶ 업무구역, 발기인수, 최저출자금 등의 설립요건을 갖추고 ▶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

○ **협동조합**

–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설립

– (업종별) 전국조합, 지방조합
[예 시]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 **사업조합**

– 특정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설립, 다만 **동일 업종의 사업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

– (전국·지방) 사업조합
[예 시] 한국농기계사업협동조합,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지방 또는 사업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상위 조직으로 전국 단위의 **업종 연합회** 설립 가능
[예 시]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중소기업중앙회**

– 협동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소기업관련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대변기관

□ 고유목적 사업 내용

사업의 종류	전국·지방 (도소매 제외)	전국·지방 (도소매)	사업조합	연합회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	△ (생산, 가공 제외)	○	○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			○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	△ (사업조정 신청만 실시)		○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	△ (시험연구만 실시)	△ (공동연구 사업만 실시)	○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	○	○	○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	○	○	○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	○	○	○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	△ (가격조사 제외)	○	○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	○	○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	○	○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	○		○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	○	○	○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지원	○	○	○	○
14.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 제외)	○	○	○	○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	○	○

5.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

종 류	업 무 구 역* (주 무 관 청)	법정 최저 발기인수	법정최저 출 자 금
협동조합 (동일업종)	전 국 (전국조합 / 중소벤처기업부)	동일업종** 50인 이상 (단,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70인 이상)	8천만원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 또는 특별 자치도 (지방조합 / 시·도지사)		4천만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일정지역 (지방조합 / 시·도지사)	동일업종 30인 이상 (단,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50인 이상)	
사 업 협동조합 (다른업종)	전국 또는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부, 시·도지사)	사업참여자*** 50인 이상 (단,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70인 이상)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일정지역 (시·도지사)	사업참여자 30인 이상 (단,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50인 이상)	
	하나의 시·군·구 또는 일정지역(시·도지사)	5인 이상	
(동일업종)	하나 또는 2이상의 시·군·구 또는 일정지역(시·도지사)	5인 이상	
연합회	전국 (업종연합회/중소벤처기업부)	3개 이상 동일업종 지방조합 (단,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10개 이상)	
	하나 또는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지역연합회/중소벤처기업부)	5개 이상 지방조합	

* 업무구역 : 조합원(회원)의 소재 범위(법 제6조) / 시·도 : **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동일업종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상 동일업종

*** 사업참여자 : 조합의 업무구역 안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참여하는 자(정관례 고시 참고)

□ 협동조합 명칭

○ 협동조합 :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 사업조합 : **지방명**과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 **설립업종**(표준산업분류)이 **업종명칭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정 가능**
  - * 부적합한 경우 : 명칭이 너무 길거나, 타조합과 유사, 사회적으로 부적절 등
- **조합원 자격 확인 : 조합원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업태** (필요시 공장등록증)

□ 발기인 수 및 출자금 요건

○ **협동조합**(전국· 지방조합)

구 분 (업무구역)	설립요건		감독기관
	최저 발기인 수	출자금의 최저한도	
전국조합 (전 국)	50인 이상	8천만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조합 (2이상의 시· 도)	50인 이상	4천만원	시·도지사
지방조합 (하나의 시· 도)	30인 이상	4천만원	시·도지사

☞ **시·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 자치도**

○ **협동조합**(도· 소매업)

구 분 (업무구역)	설립요건		감독기관
	최저 발기인 수	출자금의 최저한도	
전국조합 (전 국)	70인 이상	8천만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조합 (2이상의 시· 도)	70인 이상	4천만원	시·도지사
지방조합 (하나의 시· 도) (도·소매업종 : 하나의 시·도의 일정지역)	50인 이상	4천만원	시·도지사

○ 사업협동조합

– 다른 업종 사업조합

· 업무구역 :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

· 발 기 인 :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준용

구 분 (업무구역)	설립요건		감독기관
	최저 발기인 수	출자금의 최저한도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 도	50인 이상 (도· 소매업 70인 이상)	4천만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국) 시·도지사
하나의 시· 도 또는 하나의 시· 도의 일정지역	30인 이상 (도· 소매업 50인 이상)	4천만원	시·도지사
하나의 시· 군· 구 또는 시· 군· 구의 일정 지역	5인 이상	4천만원	시·도지사

– 같은 업종 사업조합

· 업무구역 : 시·군·구로 제한

· 발 기 인 : 5인 이상

구 분	설립요건		감독기관
	최저 발기인수	출자금의 최저한도	
하나의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 일정 지역	5인 이상	4천만원	시·도지사

6. 中企협동조합 설립 – 주무관청 제출서류(조합포털 등록)

① 설립인가신청서(기협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② 설립취지서
③ 정관
④ 사업계획서
⑤ 수지예산서
⑥ 설립동의 및 출자승낙서
⑦ 창립총회 의사록(의장과 발기인 전원 서명)
⑧ 조합원 명부(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⑨ 임원 이력서 및 사진(3×4㎝)
⑩ 발기인 및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정보이용동의서)
☞ 주무관청 장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토록 하여야 함.
⑪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신문 및 게시공고문)

★ 기타 협동조합 기능·통계·설립안내·사례·법령 등 자료는 협동조합 홈페이지(johap.kbiz.or.kr)에서 확인 가능 ★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053-524-2501 (내선 2063#)

[참고] 주요 中企협동조합 지원사업 *변경가능

1 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목적 : 지역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및 판로확대

①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 조합 당 최대 3백만원 (조합은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① 공동 R&D	업종 공통 기술개발 수행, R&D 컨설팅, 시제품 개발, R&D 성과물 검증을 위한 시험/분석 등
② 브랜드 · 상표	브랜드 컨설팅, 개발 및 등록, 사후관리 등
③ 공동 마케팅	홍보용 카탈로그·영상 제작, 전시회·박람회 참가, 홈페이지 구축 및 기능개선,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등
④ 수출	업종 및 사업별 컨소시엄 구성, 해외 전시회 등 파견
⑤ 교육 · 워크숍	경영/경제/세무 교육, 선진사례 탐방 워크숍·세미나
⑥ 기타	조합과 업계 공통현안 발굴 조사, 학술 연구용역 등

②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 조합 간 물품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 10%(최대 1백만원) 지원

▶ 대구 조합 간 거래 : 구매하는 대구 협동조합 지원

▶ 대구 조합과 타지역 조합 거래 : 구 · 판매하는 대구 협동조합 지원

[예시 1] 대구지역 내 협동조합 간 거래

- 대구A조합이 대구B조합을 통해 홍보책자 2,000만원 제작 시, 구매한 A조합에 거래금액의 10%인 100만원 지원

[예시 2] 대구지역 협동조합과 타 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

- 대구C조합이 포장용 필름을 D조합에 1,000만원 판매 시, 판매한 대구 C조합에 거래금액 10%인 100만원 지원

2 컨설팅지원단(운영·공동사업) 지원

□ 목적 : 협동조합 정관·규약·총회 등 지도 및 공동사업 방향수립

구 분	설립운영지원단	공동사업SOS지원단
분야	① 총회개최 ② 세무회계 ③ 정관규약 ④ 조합설립	① 정책자금 ② 공공조달 ③ 마케팅 ④ 해외진출 ⑤ 기술개발 ⑥ 4차산업
지원일수	연간 7일(①~③) 또는 5일 이내(④)	연간 20일 이내 (①~⑥)
기간, 비용	연중수시(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무료	
신청방법	업무포털[조합] (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컨설팅지원신청 → 설립운영지원단/공동사업SOS지원단 선택 → 신청	

3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 목적 : 협동조합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

구 분	컨설팅 지원내용
공동사업 발굴	사전 시장조사, 수익성 분석, 재무·조직진단, 마케팅 및 사업화 전략 등 신규추진 공동사업 컨설팅
공동사업 활성화	기 수행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을 통한 활성화 컨설팅
R&D과제기획	정부 R&D 지원사업 탐색 및 조합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 발굴, 해당 지원사업 신청가능한 수준의 과제기획

※ 공동사업 발굴&활성화: 정부 · 지자체 등 지원사업 신청과제인 경우 선정평가시 가점(3)

※ R&D과제기획: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R&D 신청과제의 경우 선정평가시 가점(3)

□ 대상 : 협동조합 주관 컨소시엄 (조합 1 + 컨설팅업체 1)

* 컨설팅 업체자격 :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R&D 는 별도 등록기업)

□ 지원규모 : 컨소시엄당 최대 15백만원 / 조합부담금 10% 별도

4 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

□ 목적 : 시험인증·생산·판매 등 비즈니스 전반 디지털화, 경영효율화, 환경규제 대응 협업모델 구축 및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

구 분	과 제 명
자유공모	·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특화인력양성 등

□ 지원내용 및 규모

ㅇ 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 지원, 조합당 최대 1억원 (전체 사업비의 80%)

* 단, 조합원 소상공인 비중 50% 이상 조합 제외 (소진공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요망)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자금」

□ 목적 : 中企 원부자재의 안정적 조달 및 공동사업 활성화 위한 융자

구 분		사업내용	추진사례
운전자금	협업화	공동 원자재구매, 기술개발, 제품개발, 상표개발, 판매활동, 품질관리, 수출협업 등 추진	· 공동제품개발 · 공동상표개발 · 원부자재 공동구매
시설자금	집단화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 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	· 제조공장 집단화 · 시험연구실 집단화
	공동화	업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고가의 생산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물류창고,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해 이용	· 공동전시판매장 · 공동물류창고 · 공동폐수처리시설

□ 자금융자 조건

ㅇ 대출한도 : [운전자금] 15억원 내 / [시설자금] 100억원 내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2년 거치) / [시설자금] 10년(5년 거치)

ㅇ 대출신청 : [운전자금] 중앙회 추천 / [시설자금] 중진공 직접 신청

ㅇ 대출금리 : 2.30% ± α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가능성 有)